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11. 11.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우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고, 서신독점 요금기준 통상우편요금을 정의하며, 서신송달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 제외 대상 신설(안 제1조의2)

○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나. 우편독점 요금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3)

○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으로 정함

다.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7호 단서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3.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
4.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쪽수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6.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7.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

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제1조의3(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 중 통상우편물의 규격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조제4항”을 “법 제2조제5항”으로 하고, 제4호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의 부가우편역무중”을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법 제2조제4항”을 “법 제2조제5항”으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제11조 제목 중 “부가우편역무”를 “우편역무”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제36조의3 본문 중 “신서”를 “서신”으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다.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1. 법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한 자	법 제54조의2제1항	300	600	1,000
2. 법 제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의2제1항	300	600	1,000
3.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서신의 송달을 위탁한 자	법 제54조의2제2항	50	50	50
4.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법 제54조의2제2항	50	50	50
5.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잃어버린 자	법 제54조의2제2항	50	50	5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따른 서신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3.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제본되어 발행인・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 4. 상품의 판매를 위해 가격·기능·특성 등을 문자·사진·그림으로 인쇄한 쪽수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6.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7.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신 설>	제1조의3(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우편요금중 통상우편물의 규격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을 말한다.
제3조(신서송달의 예외)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2.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3.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삭 제>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4.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5. 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6. 외국과 국제특급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5조제1항의 부가우편역무중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② ~ ④ (생 략)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 법 제2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지식경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 ------

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편업무의 위탁(제2항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5항 ----------
<신 설>	1의2. 법 제2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7. ~ 24. (생 략)	7. ~ 2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부가우편역무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이용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신서,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 서신----------.
<신 설>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연 락 처	(02) 2195-1212